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0. 5. 27.>

#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(제27조 관련)

1. 일반게임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청소년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(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 외한다)

## 가. 일반기준

- 1)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- 3) 2)의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## 나. 과징금 기준

처분대상	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
일반게임제공업자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	100,000원
청소년게임제공업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	50,000원

2.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게임제공업(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)

## 가. 일반기준

- 1)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.
- 3) 2)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4)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5)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가)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: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 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  - 나)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: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 년도의 1년간 영업정지 대상 게임물의 영업에서 발생한 총매출금액
  - 다) 신규사업, 휴업 등으로 인해 가) 및 나)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분기별・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.

## 나. 과징금 기준

등급	연간매출액	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

	(단위: 백만원)	(단위: 만원)
1	30 이하	5
2	30 초과 ~ 47 이하	8
3	47 초과 ~ 65 이하	12
4	65 초과 ~ 85 이하	16
5	85 초과 ~ 100 이하	20
6	100 초과 ~ 153 이하	24
7	153 초과 ~ 262 이하	39
8	262 초과 ~ 460 이하	68
9	460 초과 ~ 1,000 이하	132
10	1,000 초과 ~ 1,470 이하	160
11	1,470 초과 ~ 2,700 이하	250
12	2,700 초과 ~ 4,000 이하	400
13	4,000 초과 ~ 10,000 이하	700
14	10,000 초과 ~ 30,000 이하	950
15	60,000 초과 ~ 64,000 이하	1,500
16	64,000 초과	2,000